

의 안 발 의 서

의 번	안 호	2011 -
--------	--------	--------

수 신 : 거창군의회의회장

2011. 11. .

제 목 :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발의자 : 이성복·강철우·백범영·조기원·안철우의원

(찬성자 서명 별첨)

의안번호	제 호
의결연월일	2011. 11. . (제179회)

의결사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복·강철우·백범영·조기원·안철우 의원 공동발의)

발 의 자	이성복·강철우·백범영· 조기원·안철우 의원
발의연월일	2011. 11. .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복·강철우·백범영·조기원·안철우 의원 공동발의)

의안번호	제 호
------	-----

발의연월일 : 2011. 11. .

발 의 자 : 이성복·강철우·백범영·
조기원·안철우 의원

1. 제안이유

-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별표)을 개정 함.

3. 관련 법률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별					
출석요구		서류제출 · 선서 또는 증언거부			
불응1회	불응2회이상	일부거부1회	일부거부2회	전체거부1회	전체거부2회이상
100만원이상	300만원이상	50만원이상	100만원이상	200만원이상	35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500만원이하	100만원미만	200만원미만	350만원미만	500만원이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7호, 2011. 7.14, 일부개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7.14>